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NABO브리핑 nabo Briefing
2020. 04. 29. 제83호

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

예산분석실

> 정부는 4.16.(목) 국민의 소득·생계보장, 소비진작 차원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총 7.6조원 규모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, NABO는 추경안의 재원, 편성요건, 연혁, 경제적 효과,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등을 심층분석하였다.

Ⅰ. 총괄분석

1.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

편성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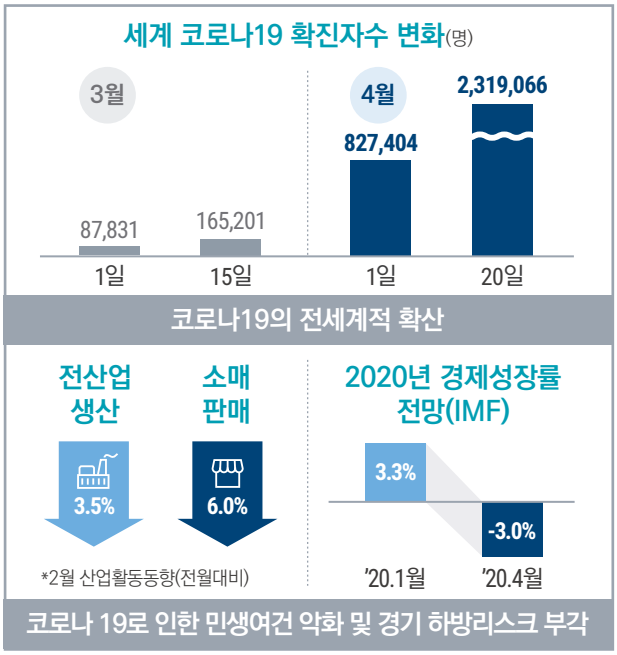

규모 및 주요내용

총 7.6조원

총 소요재원 9.7조원 中 2.1조원은 지자체

지원 대상	**소득 하위 70%이하, 1,478만 가구**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활용('20.3월 납부액 기준) 4인가구 기준 보험료 23.8(직장)~25.5(지역) 만원 이하 가구 고액 자산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,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
지원 규모	**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** 1인 가구 40만 원, 2인 가구 60만 원, 3인 가구 80만 원
지원 방식	지자체에서 활용중인 **전자화폐,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**

NABO브리핑은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보고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, 보고서의 핵심내용을 간결하게 요약·정리한 자료입니다.
보고서의 원문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(www.nabo.go.kr)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.

2. 재정총량

총수입 및 총지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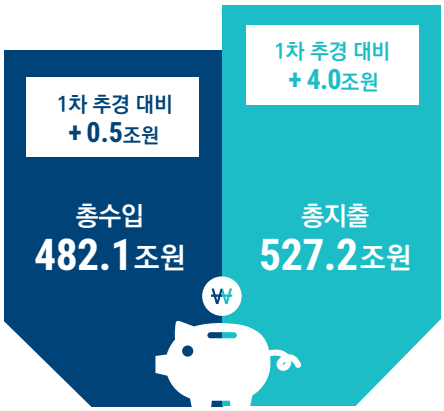

국가채무

관리재정수지 적자 △85.6조원

1차 추경대비 3.5조원 악화

3. 추경 재원 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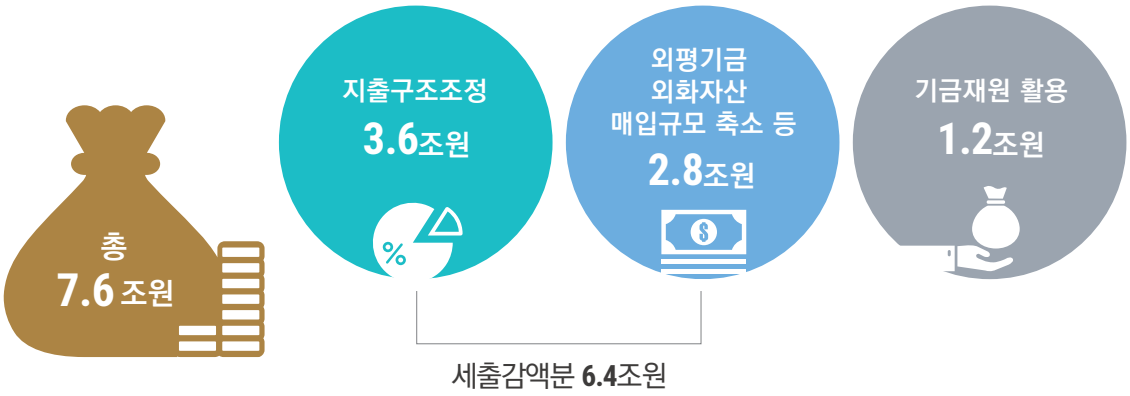

세출 감액 주요 내용

① 코로나19 등에 따른 집행여건변화 : 계약·공기 지연된 시설 공사, 對개도국 차관 등 **2.4**조원

② 금리·환율·유가 변동 영향 : 국고채 이자 절감, 외화자산 매입규모 축소, 군·경 난방비·유류비 등 **3.3**조원

③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 및 채용일정 지연에 따른 인건비 절감 등 **0.7**조원

II.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사항 분석

1. 편성요건 분석

감염병 대응

• 코로나19의 확산은 메르스 ('15년)의 피해규모를 상회하는 「국가재정법」상 '대규모 재해'에 해당

「국가재정법」 제89조 (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)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
1.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

2. 경제적 효과 분석

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한 소비 촉진효과(+)와 세출감액을 통한 정부지출 감소효과(–) 합산

2020년 경제성장률 제고효과	긴급재난지원금의 2020년 경제성장률 제고효과	세출감액의 2020년 경제성장률 감소효과
0.097~0.114%p	0.158~0.174%p	0.078%p

3. 주요국 코로나19 대응 현금지원 정책 현황

구 분		주 요 내 용
미국	지급대상·지급액	연소득 7.5만(부부합산 15만)달러 이하 개인에게 1인당 1,200달러 • 만17세 이하 자녀 1인당 500달러 추가 • 소득기준 초과 시 초과소득 $100당 지급액 $5씩 차감 → 연소득 9.9만달러(부부합산 19.8만달러) 이상부터 지급 대상 제외 • 자녀 2인인 4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15만달러 이하인 경우 3,400달러 수령, 연소득이 218,000달러 이상부터 지급 대상 제외
	지급수단·방식	현금 계좌송금 또는 수표 우편발송 • 국세청 세금신고서의 계좌·주소를 활용하여 별도 신청 없이 지급
	지급규모	약 2,900억달러 추산
일본	지급대상·지급액	국민 1인당 10만엔 지급
	지급수단·방식	현금 계좌 송금 • 우편 또는 온라인을 통한 신청 필요
	지급규모	약 12.7조엔

Ⅲ. 긴급재난지원금 분석

지급 시나리오별 장·단점 및 재정소요

(단위: 만가구, 조원)

구 분		가구수	재정규모 (국비)	특 징		해외 사례
				장 점	단 점	
보편지원	전 국민	2,200[1]	14.4 (11.3)	▪ 선별지원(소득) 대비 높은 수용성 ▪ '긴급'한 지급 가능 (선별절차 불필요)	▪ 가장 큰 재정부담 (추가 재원 마련 필요) ※ 재정부담 완화 위한 사후환수를 전제로 하는 경우 추가적인 논의 필요	미국 일본 홍콩 싱가폴
선별지원 (소득기준)	〈정부안〉 소득하위 70% 이내	1,478[1]	9.7 (7.6)	▪ 보편지원 보다 재정부담 감소	▪ 국민 수용성 부족 (배제·소득역전되는 국민들 이의제기 예상) ※ 소득기준의 논리적 근거 부족 ▪ 목적적합성 부족 (피해여부와 관계없이 지원) ▪ 지급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 소요 (선별절차로 지급지연) ▪ 선별기준(건강보험료)의 불완전성에 따른 형평성 논란 예상	-
	중위소득 100% 이하	1,100[1]	7.2 (5.7)	▪ 정부안 보다 재정부담 감소 (절감분을 고용·산업지원 등 활용 가능) ▪ 정부안 보다 피해 집중되는 저소득층 위주 지원 ▪ 정부안 보다 신속한 지급 가능 ※ 기존 복지사업, 1차추경 지원사업 및 지자체 자체사업에서 既사용중인 기준	▪ 국민 수용성 부족 (배제·소득역전되는 국민들 이의제기 예상) ▪ 목적적합성 부족 (피해여부와 관계없이 지원)	-
	중위소득 50% 이하	318[2]	2.1 (1.6)			
선별지원 (피해기준)	일정규모 이상 소득감소 가구(개인)	미정	미정	▪ 높은 목적적합성 ('재난지원금' 취지에 가장 부합) ▪ 재정부담 상대적으로 적음 (절감분을 고용·산업지원·세입경정 등에 활용 가능)	▪ 선별절차에 따른 지급지연 우려 ※ 다만, 선지급·후정산으로 해소 가능(독일사례)	독일 프랑스

주 1) 소득하위별 가구수는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시 가정한 전체 대상가구수(2,200만 가구)에 각 소득하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함
2) 관계부처합동, 「보도자료: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」, 2020.3.30.에 제시된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수
1. 국비 매칭비율(지방 8:2, 서울 7:3) 및 1~4인가구별 비율(소득하위 70%(정부안)의 비율)은 모두 동일 가정 → 이에 보다 정확한 재정규모는 정부 내부자료를 토대로 산출 필요